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행복한 세상”

노인 인권 보호지침교육

 모두가 행복한 공간 만들기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A.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A.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Q. 노인학대 신고 해야 하나요?

- A.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 된다.
- A. 신분은 보장되며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생각해보기

노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생각해보기

혐오

답답

무기력

권위

꼰대

느림

틀딱

노인

공허함

소외

더러움

안하무인

고집

무능

외로움

잔소리꾼

생각한 **그 이미지**가

미래의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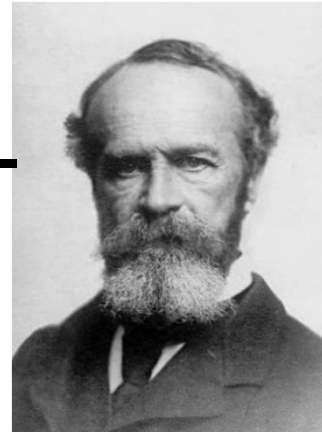
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

- 윌리엄제임스 -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매우 작은 요소부터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함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다름과 틀림의 구분
**일상적 감각의
틀 깨기**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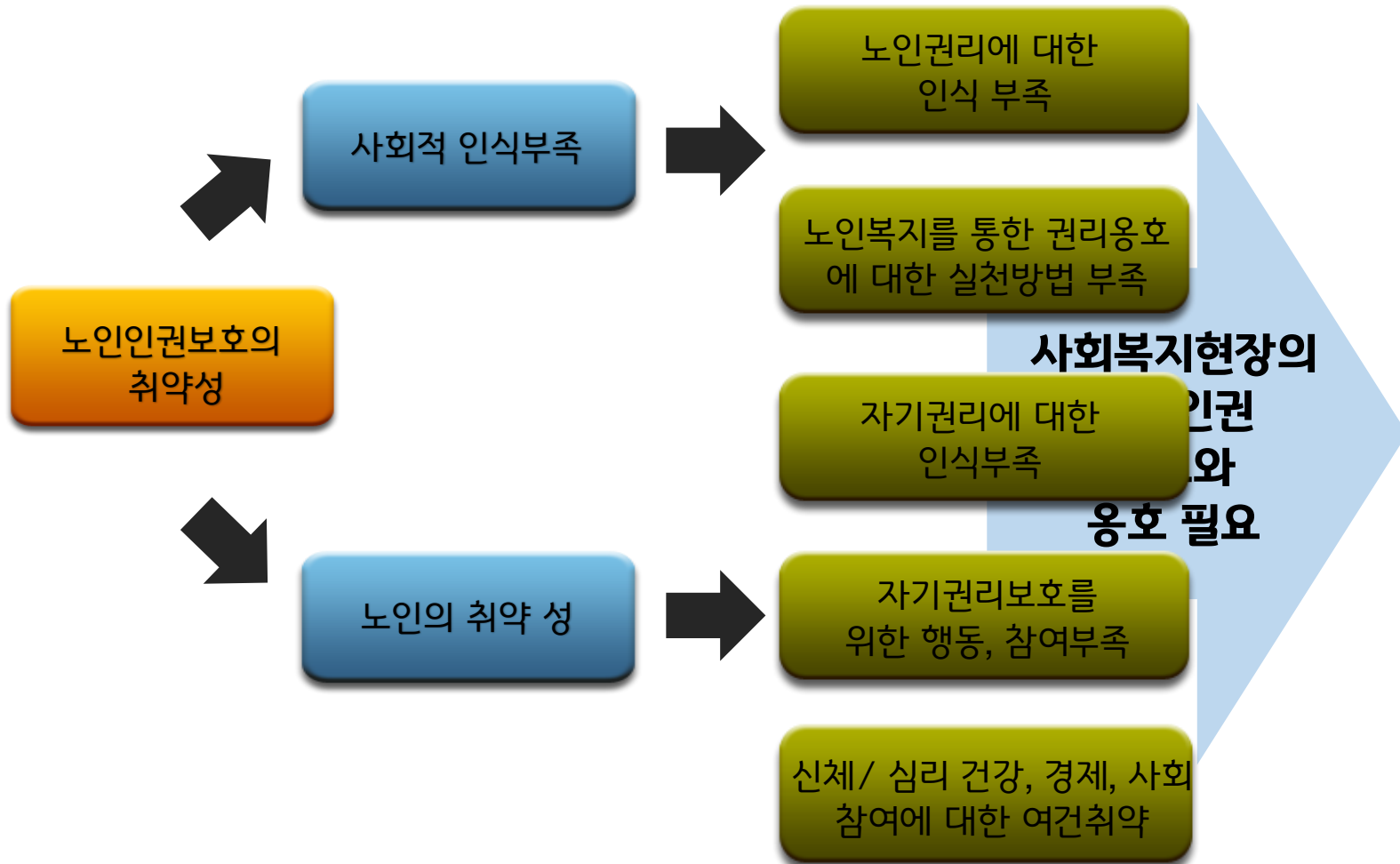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노인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1. 손 씻기

2. 급여 전 설명드리기

3. 존댓말 사용하기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노인학대 사례

여러분이 시설에 입소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73세 어르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 시설에서는 기저귀를 너무 험하게 쓴다며 일주일에 두 번만 기저귀를
배포하는데 여러분의 기저귀가 폭 젖어있는데도 요양보호사는
기저귀가 없어 갈아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침대에 신문지를 깔아둘 때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의사표현이 안 되는 옆 침대 동료는 유동식을 하는데
소변을 많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전에는 3~4캔은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2캔으로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집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말했다가
나에 대해
부담을 갖게 하기가
싫다



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가 문제를 말한 걸
알게 된다면 시설 직원들이
나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을까
두렵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SIVER SMILE



**노인을 보호하는 힘!
우리 안에 있습니다**